

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특별공급 안내

- 용인 모현읍 힐스테이트 몬테로이 1, 2, 3BL (추가모집) -

○ 신청 대상자 : 중소기업*에 재직 중인 근로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자

1. 과거 근무경력을 포함하여 중소기업에서 재직 한 기간이 5년 이상(동일한 중소기업에 근무한 경우에는 3년 이상)인 자
2.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(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대표 및 이사•감사* 제외)
* 다만 소기업에 재직 중이면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실질적 근로를 제공하는 이사•감사는 신청 가능
'13.3.1 우선공급대상 지침 개정전은 주택우선공급 대상이 아니므로 근무기간 불인정
3.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자
*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 등에 규정되어 있는 중소기업으로 일부업종 제외
- 제외업종 : 1.일반유희 주점업, 2.무도유희주점업,
3.기타 주점업, 4.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, 5.무도장 운영업
4. 서울·인천·경기에 거주하는 자(거주기간 제한 없음)

- 특별공급 일정 -

- 위치 :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왕산리 산25번지 일원
- 입주자모집공고일 : '22. 1. 20.(목) (예정)
- 특별공급 신청일 : '22. 2. 3.(목) (예정) * 추후 입주자 모집공고 참조
- 공급세대 : 12(36) ()는 예비 * 예비추천자수는 시행사와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

주택형	아파트명	1BL84C	1BL84E	1BL84F	2BL84C	2BL84D	2BL84E	2BL84F	3BL59C	3BL84E	합계
중소기업 장기근속자	용인 모현읍 힐스테이트 몬테로이	1(3)	1(3)	1(3)	2(6)	2(6)	2(6)	1(3)	1(3)	1(3)	12(36)

(*) 기신청자(21.7.1~7.6 신청자)와의 형평성을 위하여 상기타입 외 유형은 추가신청 받지 않습니다.

(*) 기신청자는 추가모집에 중복신청 불가하며 신청시 부적격처리 되므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○ 기관추천 신청기간 : '22.1.6(목) ~ 1.10.(월) 18:00까지

○ 추천대상자 발표 : '22.1.27.(목) (예정)

※ 시행사 사정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이 연기될 시, 추천대상자 발표일도 연기됨

※ 배점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주택형별 고득점 순으로 추천

※ 신청서류 검토 후 추천 여부 신청자 전원 핸드폰 문자통보

단말기 오류, 이통사 무선망 전송실패 등으로 간혹 문자가 송신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경기청 홈페이지를 통해 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○ 신청방법 : 온라인접수(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)

※ 방문, 우편접수는 받지 않습니다.

• 온라인접수 (<https://smes.go.kr/sanhakin> → 알림마당 → 주택특별공급사업공고)

○ 기타

- 신청관련 문의[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] : ☎ 031-201-6947, 6942
 - 주택관련 문의[힐스테이트 몬테로이] : ☎ 031-717-3731
 - ※ 무주택, 청약조건, 분양가 등 기타 궁금한 사항은 반드시 주택공급자에게 문의바람
 - 특별공급대상자로 추천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일 ("22.23예정)에 청약 신청하여야 하며, 미신청시 추천자 선정 대상자에서 제외 및 계약이 불가함
 - 중소기업채직여부 및 기업규모 판단이 불가능할 경우 점수 불인정
 - 사업자 등록번호는 소득금액증명원(근로소득자용)을 참고하여 기재 (가까운 세무사 또는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)
 - 과거 특별공급 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특별공급 신청 불가
 - 청약통장, 특별공급신청 등 기타 사항은 입주자 모집공고문 참고
 - 아파트 모집공고문 등이 확정되지 않아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신청기간, 배정세대 등 일부 변경될 수 있음
 -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라 특별공급에서는 소형·저가주택은 유주택으로 간주하며 5년 무주택 가점 평가 시 이에 따라 평가함
 - 추천을 받은자가 해당주택 미청약후, 타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 추천을 신청할 경우 아래의 관련규정에 따라 평가함
- (*) 입주자 모집공고일 후 2일이내까지 '추천 신청 취하서'를 받습니다. (마감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까지)

[관련규정]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에 관한 지침(중기부 고시 제2020-80호)

제9조(우선공급 대상자 확인 및 추천) ③ 제2항에 따라 추천을 받은 자가 사업주체의 입주자 모집공고일 후에 청약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후 우선공급 추천을 신청하는 때가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1년내는 10점, 1년 초과 2년내는 5점을 감한다. 다만, 입주자모집공고일 후 2일 이내에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주택우선공급 추천 신청 취하서를 관할 지방청장 등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(*) **온라인 신청시 해당사항에 신중히 체크를 부탁드립니다.**

신청완료후, 반드시 본인의 배점표상의 점수를 확인해주시고 점수 이상시, 신청기간내에 경기중소벤처기업청 (☎ 031-201-6942, 6947)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. 신청접수 마감후, 신청자 누락으로 인한 점수 미반영에 대해서는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